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281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식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D

피고2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8가단4662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과 관련한 2/4 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서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피고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4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2017. 3. 1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과 관련한 2/4 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2017. 3. 1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38호증, 갑 제47호증의 1, 갑 제48, 50호증,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52, 53호증, 갑 제55, 58호증, 갑 제7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84호증의 1, 을라 제28, 29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C, 원고와 관련한 2/4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제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2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2호증, 을라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19. 4. 23. 원고, 피고 D, B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798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0. 26.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참가인승소 판결을 선고한 점(위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1283호로 항소심 계류 중에 있음), ② 원고는 2019. 9. 5.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 주장을 철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과 관련한 2/4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L아파트

[도로명 주소] 경기 양평군 AB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1층 아파트

1층 39.08㎡

2층 222.29㎡

3층 222.29㎡

4층 222.29㎡

5층 222.29㎡

6층 222.29㎡

7층 225.16㎡

8층 210.95㎡

9층 179.13㎡

10층 131.72㎡

11층 92.6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 양평군 F 대 97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7.3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72분의 55.001 -끝-

(별지)

내 역 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92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1. 2. 3.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청구금액 : 9억 원(에 대하여 450,000,000원, , 에 대하여 각 225,000,000원)

결정일자 : 2018. 6. 4.

송달일자 : 2018. 6. 8. -끝-

